제310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8월27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부 소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 6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6
가. 환경부 소관
o 태풍 '볼라벤' 관련 현안보고 ····· 11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한성·

강은희・박인숙・김태원・김장실・이윤석・유승민・송영근・류지영・김성찬 의원 발의) ····· 18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상희・박범계・부좌현・신기남・우원식・윤관석・은수미・장하나・전순옥・홍영표 의원 발의) ····· 18
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태환・고희선・이만우・박창식・김현숙・신의진・나성린・손인춘・이병석 의원 발의) ····· 18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승남・윤후덕・박홍근・이상민・김영록・김동철・박혜자・주호영・김성곤・민홍철・한정애・은수미・최동익・정성호・배기운・김재윤・조정식 의원 발의) ····· 18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만우・김춘진・李宰榮・김재원・김성찬・서용교・이종진・류지영・황진하 의원 발의) ····· 18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정세균 의원 발의) ····· 18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강창일・김재윤・김진표・신장용・백재현・우원식・정성호・이윤석・김경협 의원 발의) ····· 19
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배기운・김우남・노영민・이춘석・박영선・정성호・주승용・안민석・양승조 의원 발의) ····· 19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성호・신성범・김한표・류지영・조원진・여상규・정희수・은수미・윤명희・박창식・강은희・송영근 의원 발의) ····· 19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한기호・권성동・이강후・염동열・김기선・황영철・김현・윤진식・김성찬・이이재・김세연・김관영・정문헌・경대수・이한성 의원 발의) ····· 19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 25
다. 고용노동부 소관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8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 발의) ····· 28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발의)(홍영표 의원 외 126인 발의) ····· 28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신동우・남경필・이한성・이우현・김성찬・민현주・김윤덕・김태원・강창일・이노근 의원 발의) ····· 28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진선미 의원 발의) ····· 28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최규성・김현미・이미경・이석현・정성호・인재근・유은혜・송호창・박완주 의원 발의) ····· 28
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윤석・이목희・이용섭・이인영・안규백・한명숙・김경협・은수미・윤관석・윤후덕・장하나・한정애 의원 발의) ····· 28
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안홍준・남경필・김정록・최봉홍・전하진・박민식・노철래・김우남・이완영 의원 발의) ····· 28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박인숙・金永柱・김장실・황영철・원유철・전하진・송광호・남경필・김현숙・김성찬・이장우・이한성・조현룡 의원 발의) ····· 28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김현숙・최봉홍・김정록・이채익・강길부・윤영석・이한성・경대수・서상기・김성태 의원 발의) ····· 28
2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김성태・김광림・조해진・안종범・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이완영・서용교・류성걸・김현숙・박근혜・안효대・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 28
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강기정・이석현・강창일・김동철・양승조・백재현・안규백・오제세・박주선 의원 발의) ····· 28
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오제세・김을동・강석호・정의화・김춘진・김태흠・박완주・강기윤・정희수 의원 발의) ····· 28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발의)(홍영표 의원 외 126인 발의) ····· 28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주선・양승조・이낙연・주승용・김춘진・박기춘・이찬열・강창일・강기정・김우남 의원 발의) ····· 28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오제세・이춘석・강창일・윤후덕・박홍근・김성주・홍종학・이찬열・우윤근・김상희・배재정・민홍철・우원식・이미경・전정희・장하나・진선미・은수미・서영교 의원 발의) ····· 29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김을동・장윤석・이만우・주호영・김동완・정문헌・최봉홍・김형태・이종진・김현숙・김성찬・김태원・윤영석・최민희・이한성・정성호・박성호・김춘진・심윤조・한선교・박인숙 의원 발의) ····· 29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진선미 의원 발의) ····· 29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김기준・김상희・김성주・김영록・김용익・박영선・박홍근・배재정・신기남・윤후덕・은수미・인재근・장하나・전정희・진성준・최동익・최민희・한명숙・김경협・홍영표・홍의락 의원 발의) ····· 29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창일・우윤근・배재정・유기홍・도종환・윤후덕・양승조・박남춘・한명숙・최민희・강동원・신경민・김관영・장하나・김광진・최규성・홍영표・박영선・한정애 의원 발의) ····· 29
3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김성태・김광림・조해진・안종범・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이완영・서용교・류성걸・김현숙・박근혜・안효대・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 29
3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발의)(박지원 의원 외 126인 발의) ····· 29
3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진선미 의원 발의) ····· 29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채익・여상규・이헌승・김희국・이재영・권성동・이한성 의원 발의) ····· 29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신학용・이낙연・박주선・김우남・최규성・전병헌・강창일・주승용・양승조 의원 발의) ····· 29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 발의) ····· 29
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찬열・배기운・오제세・이낙연・우윤근・민홍철・최민희・정성호・김광진・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 ····· 29
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도종환・우윤근・김성주・

오제세・민홍철・정성호・이춘석・김우남・최민희・유대운・김성찬 의원 발의) ····· 29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이낙연・김현・김성주・주승용・박완주・김춘진・강기정・안홍준・신경민・이학영・은수미・우원식 의원 발의) ····· 29
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 발의) ····· 29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유대운・이상민・이목희・문병호・백재현・최재성・은수미・한정애・서영교・유은혜・배기운・홍영표・김태년・인재근・박민수・최재천・원혜영・조정식・김재윤・우원식・장하나・박남춘・심상정・김경협・김상희・최민희・전정희・유인태・김동철・정성호・민홍철・김승남 의원 발의) ····· 29
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민병두・최민희・민홍철・최재천・김춘진・정성호・오제세・주승용・전정희・박주선 의원 발의) ····· 29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영주・노영민・윤관석・윤후덕・은수미・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윤석・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 발의) ····· 30
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이한성・최봉홍・이종훈・김정록・안홍준・이만우・전하진・이현재・주영순・남경필・이에리사・권은희・김장실・이완영 의원 발의) ····· 30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정갑윤・여상규・이군현・정두언・민현주・강은희・김태호・윤상현・이이재・장윤석 의원 발의) ····· 30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주선・양승조・이낙연・주승용・김춘진・박기춘・이찬열・강창일・강기정・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45) ····· 30
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낙연・조정식・김우남・강기정・양승조・이상민・신학용・전정희・김성곤・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 ····· 30
5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강기정・우윤근・이석현・강창일・김동철・양승조・백재현・안규백・오제세・박주선 의원 발의) ····· 30
5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주선・배기운・강창일・최민희・강기정・김우남・김성주・김태년・정성호・신계륜・김광진・유은혜・오영식 의원 발의) ····· 30
5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낙연・유기준・주영순・김정훈・김성찬・김동완・박성호・이종진・박인숙 의원 발의) ····· 30
5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전정희・박주선・김민기・김근태・진성준・장하나・유인태・신학용・김광진・강창일・김영환・강기정・김춘진・김동철・양승조・안규백・문희상・김용익・오제세・배기운 의원 발의) ····· 30
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재윤・전병헌・홍종학・김광진・홍의락・박수현・박영선・윤관석・문병호・서용교・우원식 의원 발의) ····· 30
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김성주・우윤근・은수미・김상희・도종환・윤후덕・양승조・박남춘・한명숙・최민희・장하나・최규성・박영선・강창일・한정애 의원 발의) ····· 30
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유승우・이현재・이종진・박인숙・권은희・정의화・신동우・김성찬・김태흠・이헌승 의원 발의) ····· 30
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재인 의원 발의)(문재인 의원 외 126인 발의) ····· 30
5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박완주・송호창・이낙연・이미경・이석현・인재근・우원식・진성준・최규성・홍종학 의원 발의) ····· 30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진선미 의원 발의) ····· 30
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최동익・박영선・최민희・배기운・

이만우・이미경・민홍철・유기홍・이종걸 의원 발의) ····· 30
6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김성태・김광림・조해진・안종범・김정록・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서용교・류성걸・김현숙・박근혜・안효대・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 30
6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발의)(은수미 의원 외 126인 발의) ····· 30
6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0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10회 국회(임시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이신 새누리당 서용교 위원을 주영순 위원으로, 간사 간의 협의로 개선이 있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만 결산보고와 심사가 끝나면 기상청에서는 태풍과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듣도록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이것 상정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예.

---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부 소관

(10시14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홍영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심상정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므로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지난번 환경부 질의 때 제가 주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날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제출이 안 돼서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요.

장관님, 두 가지거든요. 4대강 시뮬레이션 한 자료하고 또 하나는 4대강 실제 유속 측정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 우리 연구원장님 '다 가지고 계시다. 또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우리 과학원에서 자료가 있어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체류시간 시뮬레이션 한 것하고 그다음에 4대강의 유속 실측자료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부 또 국립환경과학원 소관이 아니고 그게 국토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얘기가 이게 국가통계자료라서 여기저기에서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심상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토부 산하예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심상정 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국토부 산하냐고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통계자료들이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게 물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질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체류시간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또 수질 관측 시……

○심상정 위원 그런 말씀은, 국립과학원이 환경부 산하 아닙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환경부 산하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보고를 안 하고, 환노위에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국토해양위에 가서 보고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국토부에서 자기들 소관인 자료들을 왜, 내가 만약에 농수산식품부에서 거기에서 농산물 생산량 이런 것들을……

○심상정 위원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장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지금 환경과학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일단은 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에서 담당인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왜 국토부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장관님. 여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보고와 감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어떤 협력을 하시든 간에 그것은 부처 간에 하시면 될 일이고, 환경노동위원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를 당연히 내놔야지요. 왜 국토해양부 핑계를 댑니까, 여기에서?

○환경부장관 유영숙 오늘 중에 협의 마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무슨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협의를?

저희 환경노동위원들하고의 약속보다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부 부처 간에 필요하면.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말하자면 허락을 안 해서 못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기왕에 다 있는 자료인데 그것을 제출하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실측자료를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 자료라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위원님께 자료……

○심상정 위원 그러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해서 한 시뮬레이션 자료는 주세요, 빨리. 빨리 주시고, 지금 4대강 실제 측정 자료 중에서 국토해양부가 한 게 있고 또 환경부 산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심상정 위원 환경부 산하에서 하시는 것을 주시란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그것도 제가 요청을 했지만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해서 한 자료,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자료, 그 자료를 내놓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을 져야지요, 국회 차원에서는.

○김성태 위원 이 정도 하시지요.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원장 신계륜 자, 심상정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요.

그 자료를 저에게도 똑같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세요.

○홍영표 위원 지금 심상정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정부기관에서의 모든 정보는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숨깁니까? 그걸 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요? 우리한테 자료 하나 주는데 환경노동위에 장관님이 나와 가지고 국토해양부 도장 없으면 자료 못 줍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지요, 국가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국가 기밀사항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환경노동부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줄 수 있다' 장관님 이게 말씀이 됩니까?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보고, 확인하고 판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홍영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환경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영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홍영표 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상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4일 본 위원과 김성태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이종훈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이 참석하여 환경부차관과 기상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37건의 시정, 18건의 주의, 13건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1건은 전체회의에서 시정요구 사항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37건의 시정요구 내용 중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의 이·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사업의 홍보예산을 통합하여 집행한 홍보사업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사업은 지자체가 그동안 초과 사용한 이자 차액을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계획과 달리 집행이 저조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자치단체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보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업비 불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 중 발생한 임차료 수입을 직접 집행한 해외환경산업센터 운영, 지붕 개량까지 지원이 필요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사업, 운영비 정산이 부실한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8건의 주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추계 부적정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액 과다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주의를 요구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연말 자산취득비 집중집행, WBC 사업의 자본보조 예산을 운영비로 집행한 문제,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집행 부진 등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사항 13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 필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 마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의 추진방식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제출하는 자료를 살펴본 후 전체회의에서 시정요구 수준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상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5건의 시정과 5건의 주의, 1건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과 직접비를 간접비로 사용한 독자 수치예보 모델개발 사업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예산의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국제기구·양국 간 기상협력 사업, 민간대행사업비를 경상경비로 사용한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는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안개특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도 많고 예결위도 중복되어 있는 가운데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환경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예,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국고보조율을 좀 상향조정 하는 것도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계속 보조율이 낮아 가지고 많이 집행이……

○위원장 신계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포함된 개념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영표 소위원장님,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위원장님이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신계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지붕개량사업까지 가야 한다 이런 건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 특히 하수처리장 시설, 특히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정부 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소위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환경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한 후에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환경부 보고에 의하면 현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번 결산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총인처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산소위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만들면 수질이 개선된다' 이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를 만들면 수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이런 논리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총인처리시설을 대략 한 65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을 벌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22조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들이면서 4대강 사업을 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질 개선을 위한 이런 총인처리시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보면 우리 강 관리에 관한 법안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15년까지 2.0ppm을 0.2ppm으로 낮추는 걸로 돼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 법에 규정된 기준을 갑자기 강화해 가지고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근거를 정부가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보면 현재까지 나타난 걸로만 하더라도 4대강 사업에서 대형 보를 건설하다 보니까 부영양화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 배출 허용 기준인 0.2ppm까지 맞추려면 응집침전이라든지 응집·여과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논쟁이 4대강 같은 것을 통해서는 수질이 나빠지니 비점오염원 같은 것을 제거하는 데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환경부에서 그렇지 않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인시설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성과지표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총인처리시설이 가동된 지가 얼마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지금 시설마다 다른데……

○홍영표 위원 그래도 가장 오래 된 것이 얼마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가동된 것은 아마 시설마다 다를 텐데……

○홍영표 위원 가장 오래된 거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을 말씀하신 거면 작년 말 정도에 아마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된 것은 광주하수처리장 시설이 금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가동률이라든지 인처리 제거 효율이라든지 방류측정 결과라든지,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면 바로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초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

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국정감사 전까지 저희가 반드시 제출을 받아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소위에서,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이걸 너무나 졸속으로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 측 환경과학원에서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보고서를 용역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부의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생물학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화학적 방식 하나로만 총인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30명이 비리로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되고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의문투성이고, 실제로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도 이 지표가 나오게 되면 아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총인처리시설 관련한 사안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 중순까지 환경부장관님께서 제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 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간사께서 말씀하신 게 심사소위에서 말한 것을 보고하면서 그렇게 보고드린 것이지요?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홍영표 위원장님, 지난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특히 산 관리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조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이번에 지적이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계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누락돼 있으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 유형별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다만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에 9월 국회 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부 회계구조 개선, 폐광산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대책 마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제도 변화 필요,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자체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수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하수처리장 및 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정산관리 미흡,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사업 집행관리 철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집행부진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슬레이트 대체지붕 개량사업 등 내년도 예산과도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환경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상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예보의 정확도 향상으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기상·기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기상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또는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심상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 문제는 결산에서 채택되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예산에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o 태풍 '볼라벤' 관련 현안보고

(10시40분)

○위원장 신계륜 이어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하기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지금 북상 중인 태풍 '볼라벤'과 관련된 대책 등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입니다.

우선 오늘 환노위에서 태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5호 태풍 '볼라벤'의 진로도는 영상으로 띄워놨습니다.

볼라벤은 라오스라는 나라의 고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개마고원 같은. 태풍의 홍보 목적으로 일단 '볼라벤'이라고 정했고요.

현재 위력이 930hPa이면 2002년에 매미, 2003년에 루사급의 태풍이 있었는데 현재 위력과 진로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현재 벌써 제주도 남쪽 바다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요. 오늘 오후에 남부지방 그리고 오늘 밤 늦게는 서울·경기까지 일단 태풍주의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전역이 하루 종일 태풍경보 상태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태풍의 위력이 초속 50m 그리고 바람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태풍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300㎜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난 23일부터 태풍의 진로가 서해상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태풍에 대한 대비를 행안부, 소방방재청 등 재해유관기관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도 지역기상담당관이라고 해서 지역기상담당관이 관련 지자체장이나 재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태풍의 진로라든가 위험성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태풍의 경우에는 큰 피해가 안 나더라도 낙과라든가 침수, 벼 쓰러짐 그리고 도시에서는 유리창 깨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또 다른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하루에 12개나 발생을 했는데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어서 그때 당시 언론에서 '미국 댈러스의 기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확한 예보가 우선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또 방재기관과 언론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신속한 예보의 전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이 고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기상청이라든가 정부 관련 방재 유관기관에서는 언론과 협조해서 이번 태풍의 심각성을 국민께 알려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조치를 취할 모든 조치를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최근 10년 동안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은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 국민들께서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며칠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청장님, 그냥 서서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 질의하시면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한명숙 위원 예, 제가 잠깐 여쭤 보려고요.

비행기나 KTX나 다 결항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기상청장 조석준 비행기는 결항될 가능성이 높고요. KTX는 아마 바람 속도에 따라서 운행속도를 줄이거나, KTX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완전 스톱하는 경우는 없고 아마 속도를 줄여 가면서 안전운행규칙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남한의 가장 치명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태풍의 진로를 보면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태풍의 위험 반원이 한 500㎞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치명적이다라고 할 것 없이 아마 오늘 오후 늦게는 남부지방, 저녁부터는 서울·중부지방까지 오는데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거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오늘, 그러니까 오전에 제주도에 상륙한다는 것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김성태 위원 마라도 이쪽……

○기상청장 조석준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한 500㎞ 지점이고요. 저기에 표시된 것은 중심의 위치입니다. 중심으로부터 태풍이 포함돼 있는 구름은 한 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앞자리 구름은 이미 우리나라 제주도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밤이 남해안 또 서부 쪽……

○기상청장 조석준 예, 오늘 밤에 남부이고요. 서울·경기까지도 사실은, 태풍의 영향 범위가 500㎞가 넘기 때문에 중심이 안 오더라도 이미 태풍에 의한 비가 오게 됩니다.

○김성태 위원 방송·언론에서 볼라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이 위력에 대해서, 가가호호 또 건물이 이렇게 안전조치를 취할 사항을 지금 방송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서해상으로는 23일부터 서해상 쪽으로 진로를 틀 것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단계별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언론기관이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해 주면 피해는 최소화하리라 믿습니다.

○김성태 위원 볼라벤 태풍 위력이 10년 만에 최고의 위력인데, 지금 오키나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오키나와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5만 가구의 정전 정도만 보도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오키나와의 피해 상황을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도 외신을 통해서 피해 상황을 집계하는데요, 아마도 10년 만에 올라오는 태풍에 걸맞게 상당한 피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거기 보시면 보라색선이 있고 빨간색으로 예고가 되는 진로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위치할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서귀포에서 남쪽 한 400㎞ 정도니까요, 그때부터는 거의 우리나라가 영향 범위이고, 이미 바다에서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태풍 볼라벤에 대한 기상청의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심상정 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루사나 매미 수준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루사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 사상자도 났고, 사망자도 났고 또 5조 원의 피해가 났는데 이번에 이 볼라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예측이 됐어요?

○기상청장 조석준 피해 규모를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2002년, 2003년 당시에는 대비가 조금 덜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

히 미리 알려져 있고 그동안에 재해에 관한 한 정부 유관기관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협조가 같이 되면 피해가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여쭤 보고 싶은데, 지난 2월 달에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한 9일 동안 5회 정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6월 12일 하루 동안에는 4회가 발생됐고요, 제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런데 기상청 자료에서 특이한 사항이 다른 해의 경우에는 같은 위치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소 다른 날에 발생된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례적인 상황을?

○기상청장 조석준 글쎄요, 제가 지진에 관한 전반적인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유감지진과 무감지진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무감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진계에는 기록이 되는데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그때 어떤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지진해일 피해 시나리오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방재청에 부분적으로 예측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 또 학계에서는 서울에서의 지진피해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가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최근에 원자력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그 위험성이 아주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지진해일 피해 시나리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는 MOU를 맺어 가지고 원자력발전소 주변 모니터링, 기상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방사능 관련한 각종 모니터링을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안심하고, 원자력 운영체제를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도 미리 해 놨습니다.

○심상정 위원 투명은커녕 철벽방어예요, 철벽방어.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는 그쪽의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지경부나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에 연구가 돼도 공개가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부에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는 원자력 문제가 다 환경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원자력을 다룰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낼 생각인데. 어쨌든 기상청에서 지금 첨단장비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농민의 경우에 농림부를 통해서 언제, 몇 시쯤에 어느 지역에 폭우가 올 것이다, 바람이 셀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 전달돼 있나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기상담당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는 밀감, 상주 지역 같으면 감 이런 식으로 유명 작물들이 있습니다, 특화 작물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그 지역에 또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 상황을 알려 드리고 그러면 그쪽 담당 공무원들은 그 상황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 유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협조가 돼 가지고 지금 조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광범위한 시설을 할 때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조치를 못 해서 입는 피해가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완영 위원 중심부에서 500㎞라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갑자기 서해에서 동해 쪽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는 예측할 수 없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태풍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할 수도 있는데, 태풍의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처럼 죽 정해진 코스로 가게 되고요.

○이완영 위원 그러면 서해 쪽으로 가니까 동쪽인 우리 한반도가 더 피해가 크나요, 아니면 중

국 쪽이 더 크나요?

○기상청장 조석준 오른쪽이 큽니다. 위험반원이라 그래서 오른쪽이고요.

저희가 23일 날 태풍이 서해상으로 온다고 예보했는데요. 대부분 태풍은 오다가 우측으로 전향해서 일본 쪽으로 가는 게 90%입니다. 그런데 좌측 서해상으로 온다고 예보할 수 있는 수준이 세계에서 7위 수준, 그런 정도 실력이 돼야 미리 며칠 전부터 이상 진로를 예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반경 500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라고 나오는 얘기는……

○기상청장 조석준 내일 저녁 늦게 정도면 아마 영향권에서는 거의 벗어나지 않을까……

○이완영 위원 내일 저녁으로 보면 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늦게.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하나만……

아, 말씀하세요.

○위원장 신계륜 말씀 안 하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실제 해일 문제까지 생각해 가지고 해상의 파고까지 해서 도면이 정확하게 보도가 됐습디다. 됐는데, 파고가 3m에서 15m, 13m까지 간다는데 지난번 태풍 매미호 때는 그 진로가 대한해협으로 가는 바람에 부산하고 남해안 지역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옛날 사라호 때보다 피해가 더 크지 않겠나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서해안 같은 경우에 파고가 13m라 그러면 목포나, 지난번 군산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군장공단을 만들어 놓고 해일이 덮치면 엄청난 파문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을 당시에 사리 때냐, 조금이냐 이래 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소외된 곳이 해일이 만약에 올라왔을 때, 그럴 때 되면 목포나 목포 하당지역이나 군장항 그다음에 아산만 쪽에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 주시고 집중호우 문제도 같이 병과해서 안전대책을 세워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보통 해일이 지진에 의한 해일이 있고 태풍이나 강력한 저기압이 올 때 동반되는 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자체가 약간 높아져 있어서 예전보다도 태풍에 의한 파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멀리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나 사리 때는 또 다른 영향이 더 부가돼서 더 깊숙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가 예보도 정확히 잘 내야겠지만 지역적으로 방재기관에서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새벽에 목포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사리 때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현재는, 약간 시간차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서용교 위원님!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을의 서용교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남해안, 서해안 이쪽 해안가가 피해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태풍 중심 이동경로를 보면 해안가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해양경찰청하고는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해양경찰청하고는 저희가 유관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정보 공유를 하고요. 필요한 조치를 시시각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파고가 9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양경찰청에 특별하게 주문하신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 할 때 바로 옆자리에 해양경찰청장님이 앉아 계셔 가지고 어제 예결위 참석하면서 그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가 해양경찰은 물론이고 일반 경찰 그리고 행안부에 있는 방재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태풍이 지나가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글쎄요, 태풍에 의한 피해는 과거에는 인명 피해가 주로 많았습니다. 1980년초만 해도 태풍만 오면 몇백 명이 죽었는데 요즘

은 인명 피해 자체보다는 재산 피해가 아무래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인명 피해가 간혹 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어떤 통제조치를 할 때 안 따라 주는 부분에서 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인명 피해는 줄어들고.

다만 재산 피해의 경우에는 심지어 침수에 의해서라도 고가의 공장 같은 곳은 한 번에도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위력에 의한 피해라기보다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 비 이런 것이 동반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당사자가 상당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안가에 피해가 집중될 예정 같은데 해경하고 특별히 협조관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해안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기상담당관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인명 피해도 대부분 바닷가가 될 것 같거든요.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해안가 중심으로 해양경찰청과 협조체제를 튼튼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역기상담당관제로도 다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은 기상청에서 민간인들에게 제보 받는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알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말씀하십시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상민입니다.

기상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볼라벤 태풍 경로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라 있고 굉장히 온 국민의 관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보와 두 번째 언론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김상민 위원 주말에도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의 모 관계자가 '주말에는 연락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언론사에서 너무 과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인원으로 이렇게 큰 태풍이 오기 때문에 아주 분주하게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대변인실에 계신 대변인 관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해서 '주말에는 전화하지 마라. 주말에 누가 일하고 싶겠냐' 이런 식의 태도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상청장 조석준 아주 부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당 기자하고 방송국에 사과를 드렸고요. 저희 기상청은 그렇지 않아도 24시간 365일 전국 꼭짓점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저희 대변인실 직원이 한 이야기는 아마 감정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라,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힘들고 당연히 어렵지요. 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 한 순간 사람이 한계상황을 넘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감정에 어떤 요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볼라벤 태풍이 엄청나게 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상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런 과대한 업무가 있고 언론의 요청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 하셨나요? 그러면 대변인실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사전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번 받고 또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보충도 하고 그런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런 기초적인 일에,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언론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담당자 되신 분도 그렇

고.

또 하나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밤새서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이후의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해명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느끼고 사실 기상청 역사상 처음 있는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김상민 위원 해프닝이 아니지요. 이것을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시는 청장님의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해명할 기회를 드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상청이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프닝으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문제가 큰 것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 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태풍뿐만 아니라 모든 기상 상황에 대해서 정말 밤을 새워서 열심히……

○김상민 위원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짜증나게 태풍이 왜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뺑이치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청장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대변을 해 주셔야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 태풍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모든, 그렇지 않아도 요새 폭염이라든가 폭우라든가 많은 기상이변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심려하고 계신데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본 후쿠시마는 지진에 의한 해일로 원전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도 최대 15m까지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진에 의한 해일은 아니지만 태풍에 의한 해일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1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동남해에 많이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서남쪽에도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원전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해일이나 또는 태풍이 가장 심한 시간만이라도 원전 가동을 몇 시간만이라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다든지 그런 좀 심각한 분야로 생각해서 기상청과 한수원과 또 지경부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서남해 쪽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 여파가 동남해안까지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상청이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또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튼튼하게 잘사는 사람들은 유리창 정도 깨지는 또 외부 외출을 삼간다든지 이런 점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농작물 그다음에 공장 피해 등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겠지만 주거가 굉장히 불안하고 취약한 취약계층 사람들에 대한 아주 위험한 시간에 대피 이런 것들을 특별히 세워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한 좋은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요, 서민계층에 관한 취약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드려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또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심상정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정보 제공이나 또는 협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정확한 기상정보를 드리면 아마 그 정보까지 감안해서 원자력위원회나 지경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태풍과 관련해서 여러 매뉴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원자력 부분이 독립적으로 포함돼 있어요?

○기상청장 조석준 원자력 부분이 따로 포함됐다기보다요, 저희는 어떤 기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 드리면 유관기관은 그 이후의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 2003년 매미, 루사 때도 보면 해안가의 매립지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되면 매립지 피해가 아마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상정보를 더 한 번 확인해 준다든지 또 지금 지적한 것처럼 원자력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지난번 매미 때는 부산에서 크레인도 넘어졌잖아요. 크레인이 넘어질 정도면,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면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번에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주의가 요망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해서 관계부처나 이런 부분에 정보를 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원자력위원회나 매립지나 이렇게 특수한 부분은 좀더 정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더 자주 하고 또 더 정확한 정보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매뉴얼들이 죽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북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정보들이 정리가 되고 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북한 피해는 저희가 따로보다 그것도 외신 아니면 다른 루트로, 기상청이 집계한 것은 없고요……

○심상정 위원 기상청은 그러면 북한 쪽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 안 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대개 이런 것은 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후에 대개 북한에서도 관측을 하는 자료가 3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관측되는 것은 저희가 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기상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대략 추정은 하는데 북한에서 관측한 자료 그 자체는 3국을 통해서 한 3시간 후에는 오게 됩니다.

○심상정 위원 관계부처에서는 북한 상황도 점검할 것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고양인데, 예를 들면 북한에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임진강이 어떻게 되면 바로 고양·파주 지역이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저 태풍의 경로를 보면 지금 북한을 아주 관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정비가 안 되어 있을 테니까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위기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의 피해가 엄청 클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또 관계부처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기상청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상청장 조석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북한의 황해도라든가 저쪽에 비가 많이 오면 경기도에 안 오더라도 한탄강 지역의 유원지 야영객이 피해야 되거든요,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거의 모니터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상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이미 저쪽으로 태풍이 올 것을 알고 있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도 많은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재에 관한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는 훨씬 크게 입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북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있을 겁니다. 북한도 저 정도 위력의 태풍이 가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더 하실래요?

○한정애 위원 다 말씀을……

○위원장 신계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좀 늦췄거든요, 현안보고였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저는 항상 짧게 합니다.

태풍이 가장 위력적일 때가 사실은 저렇게 해양을 왼쪽으로 껴서 에너지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오른쪽 반경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가장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항상 크고 작은 태풍이 올 때마다 시설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간판 같은 것들.

특히나 이번같이 이렇게 대형의 태풍이 지나갈 때 도심에서 간판이나, 입간판이나 또는 불법적인 어떤 가설물들에 의한 인명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지자체 그다음에 주민자치단체가 한 이틀 정도는 긴급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관계기관과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큰 도움이 됐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유관기관에 알려지면 상당히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님과 이하 여러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겠습니다. 격려 드리고요,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할 시간입니다만……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한정애 위원 결산을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 아까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위원장 신계륜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11회계연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한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시정요구 유형을 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인처리시설을 제외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소위에서 그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정하여서 시정요구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가 들어갈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은 1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환경부 소관 법률안은 총 11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들 법률안들을 모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한성·강은희·박인숙·김태원·김장실·이윤석·유승민·송영근·류지영·김성찬 의원 발의)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상희·박범계·부좌현·신기남·우원식·윤관석·은수미·장하나·전순옥·홍영표 의원 발의)

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태환·고희선·이만우·박창식·김현숙·신의진·나성린·손인춘·이병석 의원 발의)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승남·윤후덕·박홍근·이상민·김영록·김동철·박혜자·주호영·김성곤·민홍철·한정애·은수미·최동익·정성호·배기운·김재윤·조정식 의원 발의)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만우·김춘진·李宰榮·김재원·김성찬·서용교·이종진·류지

영·황진하 의원 발의)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정세균 의원 발의)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강창일·김재윤·김진표·신장용·백재현·우원식·정성호·이윤석·김경협 의원 발의)

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배기운·김우남·노영민·이춘석·박영선·정성호·주승용·안민석·양승조 의원 발의)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성호·신성범·김한표·류지영·조원진·여상규·정희수·은수미·윤명희·박창식·강은희·송영근 의원 발의)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한기호·권성동·이강후·염동열·김기선·황영철·김현·윤진식·김성찬·이이재·김세연·김관영·정문헌·경대수·이한성 의원 발의)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박기춘 의원·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최봉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이 버려지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하지만 잘 모아서 적정하게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제조업자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와 관련해 성실히 이행하기보다는 단순히 재활용업체들이 재활용한 실적을 구입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생활 폐자원 역시 약 42%만 수거되어 대부분의 소중한 자원이 버려지고 재활용업체들은 원료난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획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회수한 폐자원을 생산자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비용을 이용해 사회적 기업의 육성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자기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폐자원의 회수·재활용 책무를 다한 우수 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임을 인정해 주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수거를 효율적·경제적으로 하기 위해 유사한 폐자원은 공동으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유통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자원은 잘 활용하면 귀중한 원자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폐자원 회수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들이 회수·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뿐 아니라 나아가 현재 42%인 생활 폐자원의 회수율이 80%에 이르고 약 4만 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간 5조 원 규모의 폐자원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지금 전 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나 또 각 구청이 담당하고 있는 폐자원 회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한강수계법은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 공영정신 구현을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비롯한 특정 지자체가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97.8%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이 시행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기금 9213억 원의 91.5%인 8433억 원이 이 지역에 투입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한강수계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에는 각각 2.4%인 220억 원씩만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현행법 아래에서도 상수원관리지역 외에 상류지역의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규정 및 사업시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

습니다. 또한 법문의 '산업'이라는 표현이 어떤 공해유발요인으로 인식되어 그동안 지원실적이 매우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3년간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4조 4700억 원의 3.3%인 1482억 원만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상수원관리지역에 대응하여 상류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상류지역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청정산업'을 '청정사업'으로 바꾸고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에 대한 정의규정 및 사업시행 의무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로 인해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고 댐 건설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이 수몰되는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지역을 보더라도 수질보전을 위한 무수히 많은 중복규제로 인해 규제면적이 도 전체면적의 135%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 때문에 받는 유·무형의 피해는 강원도에서 연간 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상류지역은 원래 물이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가만두어도 되고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류지역이야말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굉장한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토록 많은 지원을 받고도 최근 남양주시청의 폐수 무단 방류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류지역이 원래가 물이 깨끗한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상류지역 주민들이 강변에 축산업, 제조업을 장려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최대한의 관심과 애정으로 동 개정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 7월 10일 제출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행위 시에 가중처벌을 하여 특별히 보호를 취하는 환경보호지역에 현재 한강수계의 수변구역만 지정되어 있어 금번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수변구역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 및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11건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분리·선별업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찬반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으로서 대중교통차량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중교통차량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원칙 허용 인허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먹는 샘물 등의 제조는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낙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용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체계 및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부 조문은 그 규정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의원님 안은 인용하고 있는 하수도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문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도 시설설치 의무화 지역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윤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건설 등으로 피해가 있는 하류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고 동 주민의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수계기금의 사용 용도와 배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최봉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개선이 목적이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진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수질개선이라는 법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고 지자체의 합의로 제정된 법안의 취지상 지자체 간 합의가 우선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과징금은 현행대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통합당 인천 부평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폐기물 분리원칙에 우선 위배됩니다. 위배되고, 처리단계가 다원화돼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현재 전국에 건설폐기물 임시집하장이 약 8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도심지역에 소재하다 보니까 건축폐기물 실은 차

량들이 왕래하면서 나는 비산먼지라든지 또 야적하면서 거기서 관리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도 건설폐기물처리장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완전히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도심에 소재하는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이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또 폐기물 분리배출을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없애 버리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봉홍 의원님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해 주셔서 저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재활용사업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해 왔는데 이런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일자리를 당장 뺏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른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 환경범죄 단속과 관련한 정부 발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환경오염 행위를 할 때 가중처벌대상인 환경보호지역을 수역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후약방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오염배출시설과 비점오염원의 증가가 상수원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제도는 친수구역특별법이라고 해서 확 풀어주면서 또 단속은 강화하는 환경부의 태도가 상당히 모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범죄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상수원 주변에 오염배출시설의 입지를 엄격하게 지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염원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환경부가 굉장히 정책을 강화하는 입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m 내지 1㎞ 지역 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불법배출 2배 내지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금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친수구역특별법으로서 오염배출이 강화되고 그러나 또 단속은 수역을 추가해 가지고 더 단속을 확대하겠다, 이것이 좀 모순되는 것이어서 하여튼 오염원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동시에 입법으로 좀 환경부가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환경오염행위의 특성과 규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원칙과 방향이 잡혀져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이런 입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규제를 할 때, 지금 이거 규제이지 않습니까? 원래 환경부는 규제를 중심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원칙과 방향을 잡고 하는지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유영숙 원칙은 전 총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하천에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점오염원에 대한 처리시설의 인 농도를 강화해서 규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라든지,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것을 선진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좀더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비점오염원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이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권한의 지방 이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배출이 2배 내지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또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지금 부과·징수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있을 때도 지방 이행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과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 이양할 때는. 그리고 또 환경오염행위가 다 각각마다 특성이 있고 또 규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어떻게 잡고 하시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첫째는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자체로 이양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랑 이 규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이 규제나 이런 것

들을 완화하는 경우에 또는 규제를 만드는 경우에 그 이해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골재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의 불법배출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골재채취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이 지자체에 상당한 수입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자체가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관광숙박업이나 골프장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키장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행을 해서 이것이 규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변질이 될 가능성이 커서 환경부에 존치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

○환경부장관 유영숙 전 총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동감을 합니다. 환경오염 단속하는 업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자체로 이양이 2002년에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한 10여 년 지나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이런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 저희 환경부의 의견하고는 상당히 달랐습니다마는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특히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셨네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단속에 대한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가끔씩 집중단속을 감시단과 때로는 최근에는 검찰과도 같이 해서 특별단속을 해 보면 평시 지자체에서 할 때 5%도 위반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가 해 보면 때로는 50%가 넘는 위반율을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지자체에서 잘 저는 관리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생기면 결국 또 환경부가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먹는물관리법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작년 9월에 입법예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자동폐기……

○한명숙 위원 입법예고했는데 발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때? 입법예고하고 발의가 됐습니까? 폐기가 된 건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자동폐기된……

○한명숙 위원 자동폐기라는 것은 회기가 끝나서……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윤종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국회에서 많은 법령들이 다 통과되지 못하고, 심의되지 못하고 시간관계상 그게 통과되지 못한……

○한명숙 위원 18대 때요?

○환경부차관 윤종수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되고 다 발의가 됐는데 심의도 못 하고 자동폐기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윤종수 예, 못 해 가지고 자동폐기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국회에 이번에 다시 제출하는 법안들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부 발의입니까? 물관리법은 정부에서 자동폐기된 것을 다시 살린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환경부차관 윤종수 예, 이번에 자동폐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고 해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환경부가 입법예고했던 것 중에서도 특별히 제조하는 제품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져서 규제가 완화되고, 허가 부분도 이제 좀 완화됐지요?

그래서 먹는 물 관리인데 이것이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한명숙 위원 지금 보면 규제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는 사실 풀어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도 덩어리 규제 같은 것 많이 풀기는 했는데요. 시장에다 맡기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환경 안전 인권 이런 것은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은 특별히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예 원래 환경부가 입법예고했던 수준으로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검토를 하셨고 저희 환경부에서도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먹는 물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좀 이것은 환경부가 입법예고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원상복귀시켜서 허가 문제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4조가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이낙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의 재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재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1건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과 법률안 등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다.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장 신계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영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영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홍영표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건의 시정, 13건의 주의, 34건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 사항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5건의 시정요구 내용 중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였던 시간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집행실적 제고와 함께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부족예산은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활용이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 인증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건의 주의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인턴 취업촉진수당은 세출예산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집행되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취업장려수당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향후 이와 같은 예산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셋째, 제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자 선정 시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집행잔액의 회계연도 내 미반납 등에 대해 주의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34건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급증, 재심사 기준요건 완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부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분방안과 사회적기업의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잡영프라자사업은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선정되는 문제가 있어 동 사업의 예산을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에 투입토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건설공사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책마련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고받으셨지요? 만약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소위원회 결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사실 검토자료를 파악해 보라고 보낸 게 있거든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이완영 위원 시간 지체되는데 그만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불법적인 사항인데 제도개선으로 된 게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빼버리고 국감 때 논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해야지……

○이완영 위원 넣어 놓고 국감 때 또 해도 되는데…… 관계없어요.

○최봉홍 위원 그 문제만 위원장님한테 위임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위원님, 자료를 기다리면서 의사진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중간에라도 오시면 발언하시고요.

○한정애 위원 찾았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찾았어요? 그러면 얼른 발언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예결산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인력공단과 검정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력공단이 기술검정원과 검정사업과 관련해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상으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검정과 관련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딱 3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3개 기관이 인력공단이 재위탁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검정원은 해당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노동부가 작년에 재위탁이 가능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했고, 18대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사실은 위탁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공단이 해당 기술검정원을 만들고 재위탁의 형식으로 9개 항목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시험을 위탁했거든요, 그것도 수의계약의 형태로.

그래서 법상 불가능한, 위탁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조건하에 사실은 위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정 자체가 계약을, 그러니까 검정을 해 주는 9개 업무를 인력공단과 검정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이게 시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계약조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상 불법하다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부의 입장이나 또는 향후 조치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임, 위탁은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정부조직법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법제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이 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자격검정과 관련해서 검정의 경우에는 그 자격검정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즉, 다시 말해서 노동부 또는 다른 부처가, 할 수 있는 기관이 딱 3개로 정해져 있고 그것은 인력공단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해당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그러면 왜 법은 개정하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내지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관련 규정에다가 추가로 확인 형으로 더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위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정애 위원 이 항목과 관련한 부분은 단순한 그냥 계약상의 문제, 계약상의 시혜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로 지금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자료와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국감을 진행한 다음에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 집니다.

○위원장 신계륜 일단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진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한정애 위원님 발언의 취지와 내용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취지로 발언했고 이것을 국감 전까지 더 많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추후에 더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 유형별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홍영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기금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정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글로벌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회계 질서 문란 등의 사실에 대해 오래 전에 감사원에 감사 실시를 요청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실 관계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해임을 포함한 징계, 사업 추진 관련 조직과 방법의 재설계 등을 포함한 근원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에 대한 신상필벌 조치를 엄정하게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기조를 더욱 공고히 해서 일

자리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만들고, 그 질을 높이는 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와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그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 경영자 모두가 이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 의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신계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지적사항과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또는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심사보고, 소위에서 작성되지 않은 정책적 건의도 눈여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5분)

○위원장 신계륜 이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의 경우 국회법 제59조에 따라서 의안의 상정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같이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 발의)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발의)(홍영표 의원 외 126인 발의)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신동우·남경필·이한성·이우현·김성찬·민현주·김윤덕·김태원·강창일·이노근 의원 발의)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진선미 의원 발의)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최규성·김현미·이미경·이석현·정성호·인재근·유은혜·송호창·박완주 의원 발의)
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윤석·이목희·이용섭·이인영·안규백·한명숙·김경협·은수미·윤관석·윤후덕·장하나·한정애 의원 발의)
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안홍준·남경필·김정록·최봉홍·전하진·박민식·노철래·김우남·이완영 의원 발의)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박인숙·金永柱·김장실·황영철·원유철·전하진·송광호·남경필·김현숙·김성찬·이장우·이한성·조현룡 의원 발의)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현숙·최봉홍·김정록·이채익·강길부·윤영석·이한성·경대수·서상기·김성태 의원 발의)
2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김성태·김광림·조해진·안종범·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이완영·서용교·류성걸·김현숙·박근혜·안효대·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강기정·이석현·강창일·김동철·양승조·백재현·안규백·오제세·박주선 의원 발의)
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오제세·김을동·강석호·정의화·김춘진·김태흠·박완주·강기윤·정희수 의원 발의)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발의)(홍영표 의원 외 126인 발의)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주선·양승조·이낙연·주승용·김춘진·박기춘·이찬열·강창일·강기정·김우남 의원 발의)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오제세·이춘석·강창일·윤후덕·박홍근·김성주·홍종학·이찬열·우윤근·김상희·배재정·민홍철·우원식·이미경·전정희·장하나·진선미·은수미·서영교 의원 발의)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김을동·장윤석·이만우·주호영·김동완·정문헌·최봉홍·김형태·이종진·김현숙·김성찬·김태원·윤영석·최민희·이한성·정성호·박성호·김춘진·심윤조·한선교·박인숙 의원 발의)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진선미 의원 발의)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김기준·김상희·김성주·김영록·김용익·박영선·박홍근·배재정·신기남·윤후덕·은수미·인재근·장하나·전정희·진성준·최동익·최민희·한명숙·김경협·홍영표·홍의락 의원 발의)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창일·우윤근·배재정·유기홍·도종환·윤후덕·양승조·박남춘·한명숙·최민희·강동원·신경민·김관영·장하나·김광진·최규성·홍영표·박영선·한정애 의원 발의)

3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김성태·김광림·조해진·안종범·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이완영·서용교·류성걸·김현숙·박근혜·안효대·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3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발의)(박지원 의원 외 126인 발의)

3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진선미 의원 발의)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채익·여상규·이헌승·김희국·이재영·권성동·이한성 의원 발의)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신학용·이낙연·박주선·김우남·최규성·전병헌·강창일·주승용·양승조 의원 발의)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 발의)

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찬열·배기운·오제세·이낙연·우윤근·민홍철·최민희·정성호·김광진·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

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도종환·우윤근·김성주·오제세·민홍철·정성호·이춘석·김우남·최민희·유대운·김성찬 의원 발의)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이낙연·김현·김성주·주승용·박완주·김춘진·강기정·안홍준·신경민·이학영·은수미·우원식 의원 발의)

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 발의)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유대운·이상민·이목희·문병호·백재현·최재성·은수미·한정애·서영교·유은혜·배기운·홍영표·김태년·인재근·박민수·최재천·원혜영·조정식·김재윤·우원식·장하나·박남춘·심상정·김경협·김상희·최민희·전정희·유인태·김동철·정성호·민홍철·김승남 의원 발의)

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민병두·최민희·민홍철·최재천·김춘진·정성호·오제세·주승용·전정희·박주선 의원 발의)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영주·노영민·윤관석·윤후덕·은수미·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윤석·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 발의)

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이한성·최봉홍·이종훈·김정록·안홍준·이만우·전하진·이현재·주영순·남경필·이에리사·권은희·김장실·이완영 의원 발의)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정갑윤·여상규·이군현·정두언·민현주·강은희·김태호·윤상현·이이재·장윤석 의원 발의)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주선·양승조·이낙연·주승용·김춘진·박기춘·이찬열·강창일·강기정·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45)

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낙연·조정식·김우남·강기정·양승조·이상민·신학용·전정희·김성곤·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

5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강기정·우윤근·이석현·강창일·김동철·양승조·백재현·안규백·오제세·박주선 의원 발의)

5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주선·배기운·강창일·최민희·강기정·김우남·김성주·김태년·정성호·신계륜·김광진·유은혜·오영식 의원 발의)

5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낙연·유기준·주영순·김정훈·김성찬·김동완·박성호·이종진·박인숙 의원 발의)

5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전정희·박주선·김민기·김근태·진성준·장하나·유인태·신학용·김광진·강창일·김영환·강기정·김춘진·김동철·양승조·안규백·문희상·김용익·오제세·배기운 의원 발의)

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재윤·전병헌·홍종학·김광진·홍의락·박수현·박영선·윤관석·문병호·서용교·우원식 의원 발의)

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김성주·우윤근·은수미·김상희·도종환·윤후덕·양승조·박남춘·한명숙·최민희·장하나·최규성·박영선·강창일·한정애 의원 발의)

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유승우·이현재·이종진·박인숙·권은희·정의화·신동우·김성찬·김태흠·이헌승 의원 발의)

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재인 의원 발의)(문재인 의원 외 126인 발의)

5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박완주·송호창·이낙연·이미경·이석현·인재근·우원식·진성준·최규성·홍종학 의원 발의)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진선미 의원 발의)

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최동익·박영선·최민희·배기운·이만우·이미경·민홍철·유기홍·이종걸 의원 발의)

6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김성태·김광림·조해진·안종범·김정록·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서용교·류성걸·김현숙·박근혜·안효대·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6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발의)(은수미 의원 외 126인 발의)

6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4시29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오늘 심사할 고용노동

부 소관 의안은 법률안 49건,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 1건 등 총 50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들 의안들을 모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홍영표 의원·신동우 의원·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목희 의원·홍영표 의원·김성태 의원·정우택 의원·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한구 의원·장병완 의원·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 홍영표 의원·오제세 의원·남인순 의원·김희정 의원·심상정 의원·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한구 의원·박지원 의원·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정의화 의원·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3항까지 김우남 의원·주승용 의원·최동익 의원·심상정 의원·이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 김우남 의원·홍영표 의원·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6항까지 윤영석 의원·오제세 의원·장병완 의원·김동철 의원·김태원 의원·김관영 의원·박남춘 의원·윤관석 의원·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0항까지 문재인 의원·이목희 의원·심상정 의원·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한구 의원·은수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9건의 법률안과 1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모두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심상정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상정 의원 건과 홍영표 의원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약 2116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하여 400시간 이상 많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여 가족·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또한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확대 적용, 그리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포괄임금 금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의 삭제,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제 도입,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폐지,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삭제, 연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

탁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을 아주 많이 제출을 하셔 가지고, 아까도 설명하셨고 또 설명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미경 의원이 아직 안 나오셨기 때문에, 김관영 의원님 지금 오셨지요?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민주당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 여러분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이 8%에 이르고, 전체 실업률 3.1%의 2.6배에 달하고 있고, 청년 실업자도 34만여 명에 이르는 등 전체 실업자의 42.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구직 단념자·취업준비생·취업무관심자 등까지 포함한다면 미취업 청년이 약 110만 명에 달할 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 3 이상씩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적용하던 공공부문뿐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도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법률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년고용촉진 종합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나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원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실업 문제로 고통받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번 발의안을 원안으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18대 환노위 위원 이미경 의원입니다.

18대 때 제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19대 때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을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반도체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이숙영·황유미 씨는 노후화된 반도체 공장의 수동설비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서 꽃다운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다른 세상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를 자임해 온 반올림이 집계한 삼성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노동자는 120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46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일 공정에서 근무하던 젊은이가 46명이나 세상을 떠났을 때는 상식적으로 사인(死人)의 업무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전자산업은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보다 직업성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에 의하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고,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화학물질이 집약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호도구조차 없이 과로에 시달리며 일했습니다. 최첨단산업, 세계적인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산재 인정을 요청하는 가족들에게 회사는 '백혈병의 원인이 다 밝혀진 게 아니다.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와 공단도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와 재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재해자가 증명하라는 상황입니다. 남은 가족들과 노동자가 외롭게 증거 수집부터 소송까지 모든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법원도 현행의 법과 관계없이 '사업주 측 또는 국가 측이 재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상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공단이 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대법원 해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직업성 질환의 입증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산재 관련 분쟁 시 노동자에게만 부과된 부담되는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노동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직업성암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기대하며,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속한 의결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국회 때 상정했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대법원을 중심으로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고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업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장기화하는 등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 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근로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에서도 일시사용 업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 파견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를 절대금지 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2년 미만이라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허가 파견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지속하는 불법적 관행을 엄단하기 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파견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차별시정 신청을 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 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들의 불법파견 남용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가치인 차별금지를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 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49건의 법률안과 1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건의 법률안 검토하고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관계로 쟁점 사항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하셨던 분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수의 사업에 고용된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따라 각 사업에서 모두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17항, 홍영표 의원·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과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직 의욕과 근로 유인이 약화된다는 주장도 있음을 유념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에 대한 공과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경제적으로 더욱 보호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5건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목희 의원안, 홍영표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 정우택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은 사업주에 대해 60세 이상 정년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아 제출하셨습니다.

그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이목희 의원안은 2033년까지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것이고, 홍영표 의원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확대의 요청 등 권고사항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며,

김성태 의원안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안입니다. 정우택 의원안은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여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며, 이완영 의원님 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임금의 일부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위반에 대해서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5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감소방안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제25항은 장병완 의원·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모집·채용 시에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차별한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 전체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며, 기본법에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게 된다면 현행 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우선재고용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정신적·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의 요건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우선재고용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과 관계된 면이 있고 근로자의 고용이 궁극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는 면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근로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법적 보호대책을 강화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사회경제적 여건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적 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를 세밀하게 설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시간 근로 문제가 개선되고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종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삭제하기보다는 그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보았습니다.

중간입니다.

의사일정 32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금지영역을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반복적인 차

별을 하는 사용자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및 35항 박지원 의원·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금지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별시정제도를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사용기간을 제한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당사자 지위를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등에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근로자의 확산·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파급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6세 이하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태아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기업이 있어서 실시 일정에 대해서 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38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은 노사관계 및 산업현장, 그리고 노동정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의 신설 또는 폐지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형량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기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심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재정수지 계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남성 배우자에 대하여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근로자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보다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위장자영인화 및 부당한 보험수수료 전가 방지방안에 대한 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반증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현재 2.5%에서 3%로 상향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의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입법의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이 경영애로로 취소되는 실정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판로를 지원해 줌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경우 경쟁유인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56항까지 10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장병완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 김태원 의원안, 김관영 의원안, 박남춘 의원안 및 윤관석 의원안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 원칙에 부정적 효과, 중장년층 등 다른 계층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안과 이채익 의원안은 공공기관 등이 지방 청년인재를 우선 고용토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른 취업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윤영석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김태원 의원안, 김관영 의원안 및 박남춘 의원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는바 기업의 인건비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고연령층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여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관영 의원안과 윤관석 의원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고용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모든 기업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기업의 범위는 확대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동철 의원안과 오제세 의원안은 청년을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른바 학력지상주의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큰 현 상황에서 입법의 기본적 취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전면적 시행을 할 경우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우월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곤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동철 의원안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고용촉진 등을 중요시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고용촉진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는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59항 문재인 의원·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사 추천인사로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결

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최저임금 권고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존중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최저임금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위원회 결정 방식보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져 적시의 결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다면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이 벌써 보고드린 제33항의 이한구 의원님안과 같으므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입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파견허용업무 및 사용사유 제한은 파견근로자의 확산·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고용이나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은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50건에 대한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50건이나 되는 안건을 갑자기 검토보고 하게 돼서 아마 많은 점에서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법률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63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여러분께서 양심적으로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민주통합당 인천 부평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동관계법을 많이 상정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저희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유례없이 많은 법안을 상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입법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이…… 지금 세계 경기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고,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용시장이 더욱 더 불안정한 상태로 가서, 특히 비정규직이라든지 특수고용직, 이런 분야가 그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어떠한 진전도 없이 그분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노위가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출범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비정규직의 문제,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이걸 개선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고,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도 공약을 내세워서 그렇게 했었고,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께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처럼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이번 정기국

회에서 비정규직, 특수직 고용 노동자 또 여타 시급한 관련 입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한 입법 또 중요한 노동관계법들을 저희가 통과시키지 못하면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은, 적어도 비정규직 관련한 입법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선후보도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관련 법, 또 하나는 고용시장 관련해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나 또 정년 연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개의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년 연장 문제도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야 간에 그렇게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사실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맨 밑바닥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뭘 하겠다' 이런 말들, 이런 공약들이 다 수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하고, 환노위에서의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직 관련법 또 노동관계 법안들의 성과가 꼭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기존의 반대만 하는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반대만 하지 말고 좀 전향적인 자세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많은 국민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해서 재벌이나 대기업 편만 들지 말고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잘 고려하셔서 입법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또 다른 발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좀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부의 양극화와 사회의 양극화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1500만 노동자다 그랬을 때 그중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특히 최근에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문제도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방향을 잡으려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해결하는 데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기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OECD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이번 정부에서 최저임금 평균 증가율이 지금 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역대 최저임금 증가율보다 꼴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태우 정부 때 15.6%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8.1%, 8.9%, 노무현 정부 때 10.6%가 되다가 이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법안이 올라간 것 중에 보면 지금 현재는 월평균 임금의 37.3%로 되어 있고 또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29.9%로 되어 있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정액급여의 50% 이하는 안 된다는 이러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위원이 있고 공익위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커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게 파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이 3명이 있는데, 모두 9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익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위원은 지금 추천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부에서 추천합니다.

○한명숙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지요? 그래서 정부의 성격과 정책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정부가 주도해

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간 법안 중에는 최저임금의 구성이나 또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심도 깊은 생각을 잘 하셔서 이번 법안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상당히 상반된 주장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도 하시지만 토론도 활발하게 하셔서 쟁점이 다른 점이 있으면 좀 부각을 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토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좀 답변 드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답변을 못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아직……

○위원장 신계륜 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당부입니까?

○위원장 신계륜 예, 당부사항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최저임금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정말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것이 있는 집에서 얼마 퍼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1개 기업, 기업을 할라 말라, 간당간당하는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정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상임위원 하면서 상당히 많이 높인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부작용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우선 장관님께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가 많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을 해서라도 일 자체가 좋아서 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예컨대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는 분이 비교적 연세가 드신 분이 많았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는 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하는 비중이 이제 달라지면서 최저임금 100% 지급을 앞두고 고용불안이 많이 우려가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과제고, 그러면서 임금소득 상실도 덜 되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 적용기간을 거쳐서 2015년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100% 다 지급하게끔 단계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년층, 고령자의 경우에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능력이 닿는 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순위상 더 빠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사업주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60세 이상 우리 노인 분들의 얘기거든요. 자꾸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노인네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차라리 임금을 조금 덜 받아도 내가 일하기를 원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자꾸 부작용이 많다, 이런 지적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법 개정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숙식비랄까요, 이런 내용들을 임금에 포함해 주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은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근로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숙식비용 이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근로개선국장님, 한번 나와 보시지요.

지금 제가 사업주들 만나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별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0이라고 치면 숙식비를 몇 %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 규정화돼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정액급여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빠져 있고요, 숙식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숙식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빼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조금 적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사업주의 부담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숙식비를 포함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 봤고 법안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

○이완영 위원 아니, 현재 적용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고요?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그것을 금지하지는 않거든요. 금지하지 않기 때문……

○이완영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행정지도도 안 하네요?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그래서 최저임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숙식비를 받으면 되거든요, 사업주가.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완영 위원 아니, 근로계약상에 받도록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고요.

다만 최저임금을 주고 숙식비를 상계하거나 계산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임금 속에 그런 현물로 해서 숙식비를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는 외국의 입법례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예,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완영 위원 일본보다 영국이 저는 더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도화를…… 그러면 그것을 따서 우리가 행정지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오히려 따로 받는 것 정도만 인정을 해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그렇지요. 그것을 행정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되려면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결특위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한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보험료 2분의 1, 3분의 1, 본격적으로 7월부터 10인 미만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실적이 금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제 기재부장관 얘기는 첫해 연도이고 집행 여부를 봐서 예산을 넓히든지 하겠다는 취지인데, 금년에 집행도 제대로 못 한다면 굉장히 이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적용을 하고 있고, 그전에 시범사업을 16개 광역시·도의 1개 자치단체별로 해 왔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추이를 봤을 때 원래 계획한 것 대비로는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사업을 처음 하는 초창기에는 조금 효과가 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첫해임에 비해서 80% 정도는 원래 예상한 것 정도로는 실제 가입하고 효과를 보리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8월 한 달 중에 지역에 있으면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만나면서 홍보하는 모습도 보곤 했는데, 실제로 이 정도 지원 가지고, 2개 보험이고 또 이 2개 보험을 가입하면 나머지 총 4대 보험을 다 가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 가지고 쉽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주 얘기도 그렇고 복지공단 직원 얘기도 그렇고요.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지원율도 높이고 2개 보험에서 실제로 더 간다면 4개까지도 넓혀 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정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100% 실적을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공단하고 노동부하고 힘을 합쳐서.

그래야만 새누리당에서 얘기했듯이 3분의 1을 2분의 1로 올리고 또 향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자꾸 나는데, 80%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말하자면 이 보험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소득 지원을 포함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해서 정부와 공단이 적극 나서야 되지만, 동시에 수용도가 높게끔 친화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같은 일을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이게 참 효과가 있구나라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빠르게 가입이 늘어나게끔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측면도 포함해서 이 사업 추진에 더욱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업종 협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가입해서 성공했다, 정말 좋았다 이런 것을 동종 업계에 많이 알려 가지고…… 정말 저는 수시로 우리 지역에 가서도 소개를 하거든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그래서 보면 솔깃해요. 일단은 솔깃한데 좀더 깊이 들어가면 나머지 2개도 다 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부터 사업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홍보부터 시작해서 발로 뛰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고용보험 전 사업장 할 때 얼마나, 골목길 준비 땅 해서 뛰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00% 금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예산 지원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또 토론하실 분……

최봉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저는 오늘 법안 심의를 한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실제 오늘 나오는 항목이 열네 가지 항목의 50개 법안입니다. 전체를 분석하니까 50개 법안인데, 실제 우리나라 노동법이, 제가 환노위 처음 열릴 때 인사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장관님 와 계십니다마는 정부는 현행법이 안착돼 간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대두가 되고 앞으로 예리한 문제까지 다 나온다면 한 백 가지 이상이 나오지 싶은데 그러면 결국 안정됐다 하는 것이 노사가 같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법안들이 전부 다 예리한 법안들이고 또 실제 내용면으로 봐서는 노동법이 노동자를 위하면서도 기업까지, 운영하는 상대방까지 합의를 이루어야 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 전체 법을 두고, 우선 오십 가지 나온 법안 중에서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법안부터 먼저 취사선택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 자체를 한번 다시 재검토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노동부장관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 이 법안 자체가 항상 충분한 검토를 했다, 금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도 14년 6개월 동안에 충분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실제 협의한 것은 한두 달 이내이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 노동법을, 실제 우리 환노위에 기업대표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런 기업과 노동조합과 또 공익 분야 전부 합쳐서 노동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 가지고 장기간을 두고 다시 검토해서 인권헌장에 즈음하는 그런 진짜배기 노동법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굉장히 폭넓은 범위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무려 50건에 해당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을 빼더라도 49건이고, 순수하게 법을 단위로 볼 때도 14개 법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1981년 이후 31년간 운영하고 있는 전체 모든 법령이 부처 간 공동입법을 포함해서 39개 법률인데 그중에서 오늘 14개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아주 방대한 그런 논의의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의 입장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의 사정 그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주 입장, 세 가지를 골고루 균형되게 고려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의 기본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정 부분 계층으로부터 이견을 보이는 것은 세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쟁점을 충분히 걸러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조법의 경우에는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유예되고, 13년 유예가 됐습니다.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 사항입니다. 그 법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장단점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절묘한 균형점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논의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안된 법안 가운데는 수용할 수 있는 법안도 상당히 있고 일부 보완하면 더 나아지는 내용도 있고 또 기존의 수십 년간 패러다임 속에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이고도 신중한 접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최저임금과 관련한 입장이 학계에서도 나뉘어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높낮이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적게 되고 많게 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노태우 정부 때 비해서 15.6%의 증가율을 보이는 데 비해서 이명박 정부는 5.2%면 3배 이상 낮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낮고, 전 정부에 비해도 2배 이상이 낮고요.

그러면 과연 최저임금이 다른 역대 정부보다 상당히 낮은데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상당히 높아졌는가? 말하자면 2배 이상 내지는 3배 이상 높아졌는가 이것만 따져보더라도 이것은 전혀 아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제고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직률을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실험적 통계나 또는 학계에서의 관점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형편을 보면 세계 제2차대전의 최저임금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원상 복귀 정도라도, 더 많이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평균 원상 복귀 정도라도 시켜야지 이렇게 최저임금을 너무 낮게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제민주화나 또는 사회양극화, 사회불안 이런 것을 도저히 줄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오륙백만 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너무나 낮게 정하는 경우에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 접근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아까도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당연히 저희도 생각하고요. 각 정부별로 인상률 평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김영삼 정부 때는 8.1%, 김대중 정부 때는 9%,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5.1% 수준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각각의 정부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만 가지고 어느 정부 때가 더 높다, 낮다 말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최저임금은 생계비라든지 유사근로자 임금이라든지 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안해서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동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15개 법률, 29개 제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이 1인 이상 사업장 모두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해서 현재 45.6%에 해당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을 평균으로 하면 38.6%지만 최저임금이 1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45.6 정도가 되고요. OECD 나라 가운데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그리고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용자위원 동수로 9명,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위원이 직접 참여해서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계 위원, 경영자위원을 노사가 추천해서 위촉하듯이 공익위원은 준근로자위원이나 준사용자위원이 아닌 공익적 차원의 성격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결코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것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분배 그리고 영세기업의 일자리 유지 능력, 한계기업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들을 두루두루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시급이 4580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금년도에는 시간당 4580원이고요.

○위원장 신계륜 4580원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인상됐을 때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내년에는 4860원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4860원이면 월 급여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주 40시간을 했을 때 약 10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니까 월 급여로 따질 때 102만 원 정도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저는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이 법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아주 깊은 토론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대체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는 제 각오라 할까, 그리고 또 같이 들어오시는 다른 새누리당 위원님들 또 민주통합당 위원님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몇 가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은 환노위원회 처음 상견례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됐다고 보수언론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환노위가 치열한 싸움터가 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많은 법을 가지고 국민들이 항상 국회를 보고 욕하는, 싸움질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첫째로 저희부터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하고 있는데 그 주제도 마찬가지고 노동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심하게 충돌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상당히 이념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이념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한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렵고 사실상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에서 그것은 국민에 대한 상당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이후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야당이 되는 쪽은 여당이 하려는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크게 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전에 많은 성과를 보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립서비스를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하는 일꾼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등 지금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 노동자 분들을 위한 주제를 먼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하나는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바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논의를 하면 사실상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비정규직을 위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하되 엄연히 존재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은, 제가 4년 동안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국가 임금협상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그리 많지 않고 아주 적은 비율이

고요. 그다음에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고용 여건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주는 하청단가라는 것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낮을 경우에 하청단가는 낮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최저임금이 고용 여건을, 양호한 고용 여건을 확보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근로자를 확보할 길이 없고 그럴 경우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하세월이고 동반성장은 구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고령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또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고용이 위협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선거운동할 때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계셨고 일하시는 고령자 분들은 대부분 독신이십니다. 혼자세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때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놓으면 그것도 공공부문에서 그것이 주기 싫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휴게시간을 늘려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으로 계산해서 도리어 받는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단순히 법제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찾는 일도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이 많은 법을 다룰 때 한 법, 한 법 진정성을 갖고, 진짜 어려운 노동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정신에서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저는 대선 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게 도덕성뿐만 아니라 책임윤리를 가져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마 중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법안소위에서도 심사를 하겠지만 결론이 안 나는 경우는 전체토론도 가끔 열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간 협의도 병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시간 노동의 형태는 사실 그닥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번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어쨌든 전면적으로 전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혁을 보면, 지금 전문위원이 작성해 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969년에 30인 이상에 대해서 전면 적용을 하고 16인 이상 사업장은 부분 적용을 했고요. 그 뒤에 1975년에 16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부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했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을 했고요. 1999년에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부분 적용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헌재는 그 당시 근로감독의 한계와 영세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현실 또 이런 것들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들이 다 합해져야만 영세사업장, 즉 다시 말해서 5인 미만까지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전면 적용하고 4인 이하에 부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적용하고 4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부분 적용을 한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십몇 년이 흐르도록 아직도 근로감독의 한계와 또 영세사업장이 근로감독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현실이 아직 안 됐는가, 그리고 확대 적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법과 규제를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분리해서 산정하는, 이것은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이렇게 휴일 근로를 별도로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연장근로를 실질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도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가 있을 뿐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판례 해석만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역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실질적으로는 교묘하게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제도가 근로시간 특례제도와 근로시간 적용 제외와 관련한 제도인데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있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61년 12월에 근기법 개정할 때 이것이 들어갑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관련된 특례제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자구수정 정도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61년 이후 12개 업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변경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마 노동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2010년과 2011년에 특례업종별로 근로시간 운영실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특례업종을 12개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례업종보다도 특례비업종의 초과근로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40년, 50년 동안 이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해당 업종의 근로시간 실태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로시간 특례제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적용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예 연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질 때 적용 제외로 해 놓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어업이나 수렵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가내공업, 가족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 형태는 사실 기업화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의 형태가 수없이 바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여기에 전혀 따라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연구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는 법과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로시간 중에 대기시간과 관련한 것도 법적 근거는 없이 판례 해석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 중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연차휴가제도인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연차휴가가 좀 적습니다. 이것의 소진율 자체가 더 낮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조장되고 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추가적인 창출, 일자리 나누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들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참가하고 계시는 또 소위에 참가하시게 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정부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7월 달 업무보고 시에도 근로시간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일정 부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장시간 노동 관행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OECD 평균보다 400시간이나 더 넘게끔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법 위반에 따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게끔 하는 계획을 제출받아서 지키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법 근거 없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법에는 휴일근로 따로 연장근로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법령 개정 없이는 행정 해석만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할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외국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든지 탄력적근로시간제도라든지 정작 정리해고 단계로 가지 않고 평소에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포함해서 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의지는 전혀 의심할 사항이 없고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정부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최근에도 완성차 업체에 대한 감독도 하고 자동차 부품사 감독도 하고 식료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했습니다.

그 개선방안도 제출을 받아서 지키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끔, 그리고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근로시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시·단속적 근로라든지 관리감독, 기밀 취급이라든지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진국을 포함해서 EU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적용 제외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듬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정부안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한정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정애 위원 예, 일단은……

○위원장대리 홍영표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질의가 아니라 토론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19대 국회가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를 새로 그리는 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 역시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점을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기업에서 정리해고가 남발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한 쌍용차 문제에서 드러났습니다만 KT와 같은 경우도 대표적 사례입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KT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해고가 된,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된 일자리가 2만 6555명입니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웃소싱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2만 6555명이 정리해고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자만 266명이며 그중의 16명이 사실은 자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현실이 KT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얼마나 KT가 성장했느냐 하면 의결가능 주식 중에 외국인 지분율이 2008년 현재 약 63%이고, 배당 성향을 보면 2002년에 10%였던 배당 성향이 2008년에 50%로 늘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이 창출되면 50%는 무조건 이익으로 배당이 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자 소득으로 주다 보니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그로 인한 자살과 사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19대 국회에서 기본 입장이 저는 입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정리해고와 더불어 지금 심각하게 일자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즉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를 새로 그려야 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사내하청, 특히 불법파견 활용 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사실은 해석을 통해서, 즉 판례의 광범위한 적용을 통해서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다 하더라고 불법적인 관행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현대차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파견과 도급에 대한 기준을 입법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노동자들은 소송을 남발하는 사용자 측에 밀려 사내하청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꾸로 불법파견의 혐의가 짙은 사용자 측은 마치 시혜라도 하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을 일부 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일자리 전체를 무너뜨려서 지금 비정규 공장에 비정규 병원까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병원은 총 인원이 18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900명이 정규직이고 600명이 사내하청입니다. 이 중에는 간호보조사까지 들어 있고요, 나머지 약 300명이 또한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비정규 병원까지 생겨서

환자 및 그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사내하청, 특히 불법파견을 규제하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 역시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 입법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 현실성을 무엇을 가지고 담보할까, 어떤 목표를 가질까인데, 현재 정부 통계로서 비정규직이 약 34%, 노동계 통계로 약 5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도대체 이 34%에서 50% 사이에 있는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을 어느 정도로 향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일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차별시정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최저임금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인 이상 사업장 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통계 장난을 하는 것에는 그다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적당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수년간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의 상당수가 50·60대에서 늘어난 것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LIS, 즉 룩셈부르크 인컴 스터디(Luxembourg Income Study)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개의 선진국은 소득수준과 가구당 취업자 수가 정비례합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당 취업자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으면 사실은 사회안전망 등에 의한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소득수준과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평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가난한 가구는 취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저임금 근로이기 때문에 저소득을 벗어날 수가 없고 고소득하고는, 사실은 1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가지고, 즉 남성만이 주로 취업을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도 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또한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는 것에 19대 국회가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30%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 할인마트에서 얼마 전에 협상이 일어났는데 매출단가 대비 26%의 수수료였던 것을 28%로 올려 달라는 요구에 사실은 당시 하청업체 사장이 난색을 표명한 이유가 1~2%의 수수료만 늘어나도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할 때 저는 최저임금 올리고 동시에 대기업의 그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데 19대 국회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에서의 노동3권은 겉치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이며 또한 적용되어야 될 가치고, 이런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한국의 일자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헌법상의 노동권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가치로 유지되어야 되며, 특히 정부와 국회가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법안 소위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좀더 기준으로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은수미 위원님……

○한명숙 위원 자료 제출 하나만……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러면 한명숙 위원님 자료 제출 말씀하십시오.

○한명숙 위원 아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최저임금이 OECD 제일 꼴찌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 역대 정권에서의 최저임금 변동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 정권에서의 최저임금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것을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역대 정권이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그 다른 기준과 통계에 대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29

개 법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정권에서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안 미치는가, 똑같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OECD 국가에서도 수십 개 OECD 국가에서 지금 꼴찌인데 그 나라들에서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전 사업장이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법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 조건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 논리상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다만 여러 정권에서 최저임금과 실질최저임금 변동 추이를 볼 때 어떻게 그 기준을 다르게 해서 산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낮은 것이 아니라는지 그 입증을 자료 제출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정부별로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만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정부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만의 비교에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라별로 최저임금이 연동되는 제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연동시키는 제도가 더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제안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지금 정말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 것 같아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단순한 수준 문제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의 최저임금, 또 청소용역업계도 정말 정부가 발주하는 청소용역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포함해서……

오늘 고령자 문제, 최저임금 적용 문제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적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노위원들께서 좀더 현장감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통계, 자료 이런 것만 조사해 가지고 우리 노동부에 대해서 개선요구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여러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최저임금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언제 그냥 하루쯤은 노동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원하청 쓰고 있는 데, 그리고 1개 기업을 한번 가 가지고 또 한번 들어보고, 근로자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지고 정말, 전체회의에서 안 되면 법안소위에서라도 그런 작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들어서 위원장님께 한번 제안해 드려 봅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생각하고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신계륜 예, 그러십시오.

홍영표 위원님!

○홍영표 위원 오늘 참 상당히 건설적인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법안이 이렇게 많이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쟁점이 있는 사안도 있고 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 측면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도 이 최저임금제를 우리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평균임금의 50%라도 빨리 하자, 이것을 할 때 지금의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법안이 그렇습니다. 정리해고 법안도 그렇고 비정규직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 특고법, 다 이 개별적인 상황 또 어떤 부문, 산업, 이런 쪽으로 보면 그것 다 따지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 왔고 더 이상 정말 이 방법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을 바꾸지 않고 자꾸 현실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든 비정규직 문제든 그것을 지금 현실화해서 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 최저임금, 지금 얼마지요? 4680원?

이게 이제 한 달 하면 101만 원인데……

○은수미 위원 4580원.

○홍영표 위원 4580원, 내가 괜히 또 한 80원 더 많이 불렀네요.

그런데 이게 101만 원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이 지금 2만 4000불, 2만 3000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선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규모 또 수준, 이런 것에 비춰 봐서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걸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더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노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이 많은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되어 있는데 다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재벌 또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함께 고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환노위에서는 정말 최저임금을 최소한이라도 현실화해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먼저 해 나가면서 다른 쪽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노동부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불만인 것이 이해당사자, 기업과 또 노동자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이해관계를 다 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현실론을 고민하다 보면 기업의 입장만 대변합니다.

그것이 우리 노동시장 정책의 어떤 실체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바꾸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진전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전체토론을 한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더 진행상황을 보아 가면서 한 번 더 토론, 두 번 더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장하나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 발언하시겠지요?

○한정애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누구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완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계륜 그래요.

이렇게 세 분의 발언을 좀 듣고 1차 토론을 종결하는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먼저 장하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본질적으로 하려던 질문은 아닌데 그래도 장관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할 때 근로자위원 9명 중에 8명이 없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국민여론이 이것이 파행됐다, 이런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짧게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27명의 위원 모두가 참여하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개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홉 분 가운데 여덟 분은 결정적인 회의 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회의장 안에는 노동계의 직원이 배석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위원 아홉 분 가운데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 위원만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국민노총이, 전국 단위의 노동단체가 생기면서 법에 따라서 전국 단위 노동단체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석이 돌아간 셈이지요.

말하자면 큰아들, 둘째 아들만 회의에 참석하

고 셋째 아들은 회의에 넣지 말라는 주장인데 반해서 저희들은 법령요건에 맞게 다양성을 바탕으로 대표성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세 노동단체의 위원들, 네 분, 네 분, 한 분 이렇게 아홉 분이 구성돼 있는 나머지 그것에 대한 이견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덟 분의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꼭 결정까지 했어야 됐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걸 여쭤 봤던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건 꼭 결정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하나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있고 최저임금을 정해 놓았는데요. 최저임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최저임금이 필요하고 왜 법적으로 정해 놓는지, 최저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장관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노동력을 유지하고 보전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게끔, 생산성이라든지 유사근로자 임금,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얘기를 좀 드렸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좀 여쭤 봤는데 아시겠지만 정신장애라든가 신체장애를 가진 노동자들, 수습 노동자 또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는 노동자,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까 근로자의, 노동자의 어떤 생계라든가 노동력 유지를 얘기하셨고요. 또 사실 헌법상의 노동권이 모든 국민에게는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어떤 이런 것들이 생계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기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좀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장관님의 답도 듣고 싶고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바라볼 것인지, 좀 재고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더 지급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복지적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라는 뜻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개개인, 어떤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 승인을 개개인 단위로 받아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제외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것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장애인에게 모두 100%, 1명의 예외도 없이 다 지급하게 했을 때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것을 반영했을 뿐이지 본 취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오히려 적용하고 강화 적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비록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능력은 그 장애 부분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월등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게 그 근로능력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하고 연동시켜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적용제외 승인의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고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달리 대우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그냥 견해와 입장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로 여쭤 본 것이고요.

제 발언기회인데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 어떤 제안이랄까, 그런 말씀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전체 근로자의 25% 중에 어떤 그룹들이 더 최저임금을 많이 받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일단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을 많이 적용받고 있고요.

또 아까 감시·단속적 근로 얘기도 나왔지만 노인층, 노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또는 그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또 지금 청년고용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최저임금 적용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법상에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들어가서…… 아까 전국 단위의 노조 얘기를 하셨지만 그 외에 오히려 노조로 조직이 안 돼 있는 노동자들이 사실 최저임금의 더 당사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법상 반영되어야 되고, 들어갔으면 하고 이후에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 점을 많이 좀 살펴주시고 관심을 많이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고용특별법도 개정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청년고용특별법의 한계라고 한다면 사실은 강제력,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든 페널티가 있든 업체라든가 공공기관에 강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만이 이게 지켜진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지금 거의 10개 정도의 많은 청년고용특별법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효성을 얹기 위해서 지키지 않은 기업에 있어서 어떤 처벌규정을 놓고 또 잘 지켰을 때는 거기다가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일단 지금 공공기관에서 좀 벗어나서 한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 또는 연매출 1000억 정도,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런 기업에도 이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굉장히 많은 것을 여쭤 주셨는데요.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근로자위원의 경우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전을 의뢰하면서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보강할 수 있는 쪽으로 추천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단체 관계자 위주로 오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가 위원을 추천한 단체에서도 계속 감안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사항 속에서도 그나마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셨다라는 점이고 또 다양한 계층, 예컨대 청년계층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위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추천을 하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현재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3% 이상 채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그 의무 수준을 지켰습니다마는 저는 공공기관에서는 더욱더 청년 채용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정을 넘어서서 더욱더 선도적으로 특히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 문제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의 경우에도 특히 기업규모가 큰 곳일수록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과 연동시켜서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양극화가 초래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의미에서, 내수기반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끼리 토론시간이기는 하지만 또 장관의 의견도 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토론이 주니까 자신의 주장과 주의 이런 걸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는 또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노동부가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파행으로 끝이 난

최저임금위원회에 한번 방문을 하고 박준성 위원장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법안이 여기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의 한 축은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들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방면의 고민들을 담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저는 그 논의는 정말 좋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적인 부분에서 합법화시켜 주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사회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법안의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같은 이런 상태라는 거지요. 불법 파견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관리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 지시를 하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비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이미 우리 사회에 불법 파견과 관련한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 뭐 좀 되게끔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땜질식으로 접근을 하다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결국은 해소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가 총선기간 중에 지원을 나가다가 커피 같은 게 중간에 목도 마르고 하니까 먹고 싶어서 흔히 말해서 대기업이 프랜차이즈화하고 있는 빵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하나 주문하고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있길래 그냥 물어봤습니다. “혹시 시급 얼마 받아요?” 그게 올해 4월입니다. “시급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4000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노동부에서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 대형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1차 한번 다 전면적으로 전면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시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번 특별점검 또는 이런 식의 점검, 상시점검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시하고 하는 체제가 아닌 무슨 일이 터지고 사회적으로 조금 시끄러울 때 특별점검의 형태로 하고 나면 그때 일부 개선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4000원, 4000원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동안에 그거 문제를 제기하면 보나마나 잘릴 테니까 끝날 때쯤 돼 가지고 우리 고용노동부 지청에다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산에서 성폭행 당한 것을 비관해서 자살한 그 여학생의 경우에는 하루 9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게끔 관리하는 부처가 그냥 있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해당 부처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미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태풍 ‘볼라벤’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학교들도 휴학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현장 관련해서 타워크레인들이 이번에 어쨌든 풍속이 얼마나 셀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노동부가 이것저것 다 관리 감독하시는데 힘든 것은 알지만 볼라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한 건설현장과 관련해서 혹시 가설물이라든지 타워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중대사고가 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발언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대체토론 열심히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위원님들은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공감되는 것도 많고요, 하여튼 최저임금 관련해서 보면 또 말씀 주시는 것 보면 좀 이상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사회통합 또는 임금 양극화 해소는 사실 유럽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높여 주지 않음으로 해서 미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유럽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임금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저임금상임위원 때 민주노총연맹위원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봉제납품업체인데 이 사장님이 바로 1년 전에 50명 여성근로자를 데리고 사업체를 차렸는데 민주노총연맹장이 물었습니다. “사장되니까 좋지요?” 그랬더니만 사장님이 “저는 저렇게 봉제근로자로 차라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 했소?” “제가 저 50명을 데리고 먹고 살려고 하니, 제가 20년 동안 저 아줌마들하고 같이 봉제를 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 내가 이거라도 하나 차려 가지고 납품받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는데 조금 더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좋은데, 사장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50명은 어디 가서 100만 원이라도 법니까?” 이런 게, 참 함축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장도 많이 잘 아시고 참 공감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최저임금 문제만큼은 이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통하지 않고, 수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하청 문제입니다.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4차 가면 당연히 최저임금이고요.

특히 청소, 경비, 청소용역 이것도 전부 같이 프러포즈해 가지고 제일 싸게 주는 데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우리가 현장을 보고 반드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원청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같이 위원들이 한번 보면서, 저는 최저임금 올리자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 작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화를 해야 된다, 위원 구성도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근로자층과 사업주도 당연하고요. 저소득층, 비정규직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까지도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위원 구성이나 수준 문제, 작동시스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좀 우리 환노위가, 처음에 우리 환노위 발족할 때 대안을 제시하자,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야 의견 다르게 제안할 게 아니라 정말 현장도 한번 보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좋은 제안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드리는 것 같이 한번,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한번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김성태 위원님이 소위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 발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대체토론이 끝나고 나면 법안소위로 다 상정이 될 것인데 대체적으로 토론이 여러분들 웬만큼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 법안이 지금 꽤 많은데 최저임금법 논의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법들을 보면 상당히 논의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참석하는 위원님들만 이것을 판단하고 고민할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대체로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음 경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법안 회부된 내용을 각 의원실마다, 정확하게 법

안내용은 다 파악은 안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체토론이 끝나고 이 법안이 소위로 넘어오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좀 일정을 충분하게 앞으로 고려해서 잡겠습니다, 소위 일정을. 그 안에 여러분들이 좀 더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정부입장에서도 법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체토론이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입장이 웬만큼 정리를 하셨다면 법안소위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상 49건의 법률안, 1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63항까지 이상 50건의 의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회부하기 전에 저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이 있었으면 했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시면서 어렵게 부딪히는 문제는 삼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토론을 붙여도 토론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비정규직 보호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정당, 정파를 떠나서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많이 논의하셨고요, 특히 노동조합법 문제도 지금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이런 중요 쟁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찰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필요하면 대체토론 여러 번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까지 협의도 하고, 아까 이완영 위원이 제안했듯이 소위를 만들 수도 있고, 현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늘 이렇게 법안을 우리 상임위에 상정하고 전체를 다 소위에 회부하면 제가 볼 때 위원님들 대체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로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전체 대체토론을 조금 더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그래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도 대체토론이 얼마든지 중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는 소위대로 진행을 하고, 여야 간사는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고 또 전체회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대체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50건 의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는 말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여야 간사는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서 기왕에 합의된 2개 청문회, 쌍용차청문회하고 SJM사업장, 컨택터스 폭력 문제 이 문제 청문회는 빨리 합의를 해서 일정을 빨리 잡아주시고 또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해 주셔야, 일주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MBC 파업 관련해서도 환노위가 무언가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께서 청문회를 이미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야 간사가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륜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김 관 영	김 진 태	이 미 경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천 병 호
전 문 위 원	이 동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유 영 숙

차관	윤	종 수
기획조정실장	정	연 만
환경정책실장	송	재 용
물환경정책국장	이	정 섭
자연보전국장	백	규 석
자원순환국장	최	홍 진
녹색환경정책관	이	찬 희
환경보건정책관	정	회 석
기후대기정책관	박	천 규
상하수도정책관	김	진 석
국제협력관	유	연 철
대변인직무대리	박	광 석
국립환경과학원장	박	석 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박	응 렬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차관	이	기 권
기획조정실장	전	운 배
고용정책실장	한	창 훈
노동정책실장	조	재 정
노동시장정책관	이	재 홍
인력수급정책관	이	태 희
직업능력정책관	박	성 희
고용평등정책관	신	기 창
고용서비스정책관	정	지 원
근로개선정책관	박	종 길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	기 섭
노사협력정책관	권	혁 태
공공노사정책관	시	민 석
정책기획관	김	재 훈
대변인	김	경 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	영 중
기상청		
청장	조	석 준
차장	이	일 수
기획조정관	박	정 규
예보국장	이	우 진
관측기반국장	박	관 영
기후과학국장	엄	원 근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	재 철
수치모델관리관	육	명 렬
지진관리관	김	영 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	광 준